

충청북도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(안)

심 사 보 고 서

1997. 12. 22
내 무 위 원 회

1. 심사경과

가. 제출자 : 충청북도지사

나. 제출 및 회부일자

· 제출일자 : 1997년 11월 26일

· 회부일자 : 1997년 11월 26일

다. 상정일자 : 제143회 정기회

· 제9차 내무위원회(1997. 12. 22)상정,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
심의의결

2. 제안설명 요지

(제안설명자 : 내무국장 박경국)

가. 제안이유

- 간호조무사 및 의료 유사업자에 관한 규칙이 개정되어 간호조무사 자격 시험 응시수수료 및 자격증 재교부 등에 관한 사항이 위임(보건 복지부령 제13호)되었으며
- 지방공무원 임용시험과 유사 자격시험 응시수수료와의 균형유지, 시험 집행에 따른 소요경비 등 제반실정에 맞도록 조정하고 이를 충청북도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조례에 신설하여 시험관리에 철저를 기하기 위함.

나. 주요골자

- 간호조무사 자격시험 응시 수수료를 당초 2,000원에서 5,000원으로 변경하며
- 자격증 재교부 수수료는 당초와 변경없이 500원으로 조례에 신설함.

3. 전문위원 검토요지

(전문위원 오 건 영)

충청북도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조례중 개정조례안을 검토한 바

본 조례안은 간호조무사 및 의료 유사업자에 관한 규칙이 보건 복지부령 제13호로 개정되어 제증명등 수수료 요율표에 자격시험 관련 사항을 신설하여 간호조무사 자격시험 응시원서 교부 신청시 건당 5,000원 및 간호조무사 자격증 재교부 신청시 건당 500원의 수수료를 징수하여 시험관리에 철저를 기하고자 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됨.

4. 질의 및 답변 요지 : “생략”

5. 토 론 요 지 : “생략”

6. 심 사 결 과 : 원안가결

7. 소수 의견 요지 : “없 음”

8. 기타 필요한 사항 : “없 음”

9. 심사보고서 첨부서류

- 충청북도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(안)
- 신·구조문 대비표